

B2B납품대금 지급업무대행 계약서 (외화팩토링)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구매기업”이라 하고,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한다)는 “구매기업”의 “판매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매입(B2B외화팩토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지급업무 대행 등을 위한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구매기업”의 “판매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매입(B2B외화팩토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 “물품등”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본 계약”에 따라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 받는 기업으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모든 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 B2B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과 서울보증보험(주)의 e-Biz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입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2. “물품등”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물품, 용역 등을 말한다.
3. “매출채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등”을 공급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한다.
4. “납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매출채권” 취득의 반대의 급부로 “구매기업”에게 행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물품등”의 공급행위(물품 인도, 용역 제공 등)를 말한다.
5.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매입”이란 “구매기업”이 전송한 매출채권명세통보상의 “구매기업”의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은행”이 매입을 하는 경우, “은행”이 “구매기업”의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구매기업”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구매기업”의 판매기업 앞 매입금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은행”과 판매기업이 따로 정한 경우와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의 고의 또는 사기 등으로 “은행”이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은행”은 판매기업 앞으로 매입금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조 (정보교환)

양 당사자는 “판매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4조 (업무처리 기본절차)

① (포괄양수도계약)

1. “판매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을 “은행”에게 매도하기를 원할 경우 “은행”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매출채권”을 “판매기업”으로부터 양

수하고 “판매기업”의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 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판매기업”과 체결한다.

2. “은행”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확정일자 있는 중서(내용증명우편을 원칙으로 함)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구매기업”은 제2호의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급제한사유’라고 함)가 존재하거나 생길 경우 및 그에 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리얼타임 평뱅킹, 파일전송평뱅킹 기타 전산상의 방법 (“은행” 또는 “구매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전산상의 방법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문서를 통하여 “은행”에게 통보할 수 있기로 하며 이하 “전산 방법” 이라 한다)으로 “은행”에게 통보한다.
 - 가. “매출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송달을 받았거나 “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경우
 - 나. “가” 목 이외에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과 제3자 사이에서 “매출채권”에 관한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라.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변제기 도래시기를 불문함)
 - 마. 판매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구매기업”에게 매출채권의 성립·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출채권 명세 통보)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등”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경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구매기업은 업체별 납품명세(판매자, 구매품목, 구매일자, 구매금액, 대금만기일 등의 거래정보)를 Market place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주) 앞으로 전송하고 서울보증보험(주)는 전자상거래 거래건별 매매정보 및 매입신청 정보(매입일괄실행일,매입실행금액, 대금만기일 등)를 “전산방법”으로 매출채권의 대금만기일의 2영업일전 “은행”의 영업시간까지 “은행”에게 전송한다. 이 경우, “은행”으로부터 제1항 제2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구매기업”은 동 명세서에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제한사유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고 동 명세서의 하단에 “위 판매기업이 당사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 명세 ○○건 총 ○○○원에 대하여, 당사는 하나은행으로의 채권양도를 아무런 이의없이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울보증보험(주)에 전송하고 서울보증보험(주)는 “은행”에게 “전산 방법 또는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동 명세 통보시 위 승낙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매기업”은 그 승낙이 이의 유보없는 승낙의 의사 임을 보장, 확약한다

③ (매출채권 매입)

“은행”은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양도계약(포괄양수도계약)과 제2항의 채권명세 통보를 기초로 하여 “판매기업”이 요청시 매출채권을 매입한다.

④ (양수금 등 지급)

1. “구매기업”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이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 명세서에 기재된 대금만기일에 “은행”이 지정한 다음의 “구매기업” 명의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동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 출금제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동 내용을 즉시 “구매기업”에게 “전산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원만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은행”과 “구매기업”이 상호 협조한다.

예금과목	계좌번호	예금주

2. “구매기업”이 MP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MP사에서 지정한 일자에 상기 “구매기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일자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관여하지 않고 “구매기업”과 MP사간 직접 해결하기로 한다.
3. “은행”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출금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된 금액을 별도의 예금청구서, 통장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제3항에 따라 매입한 매출채권의 양수금과 MP수수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되 매출채권의 양수금을 MP수수료에 우선하여 충당한다.
4. 위 3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양수금 및 MP수수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은행”이 매입하지 않은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급에 충당한다.

제5조 (구매기업의 보장 및 확약)

- ① “구매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은행”이 양수한 “매출채권”에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에게 전송한 내용대로 그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
 1. 제4조 제②항에 따라 통보한 “매출채권” 성립의 유효성
 2. 제1호 소정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약정의 부존재와 원인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사유의 부존재
 3. 제4조에 따라 통보한 내용의 진정성 및 정확성
 - ② “구매기업”은 “은행”이 양수한 “매출채권”에 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금액을 해당 만기일에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분쟁 또는 양도의 효력 및 대항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조건없이 “은행”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제6조 (충당순서 및 지연손해금 등)

- ① “구매기업”이 제4조 제④항 에 따른 지급을 행함에 있어 채권명세통보서상의 만기일에 지급해야 할 “매출채권” 해당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금액 범위내에서 “판매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충당한다. 1)매입취급 여부 : ”제4조 제②항 채권명세통보(이하 “명세통보”라 한다)를 근거로 매입한 매출채권은 회수상환될 때까지 → 그 이외의 매출채권의 순서(만기일 포함한 5영업일까지 제4조 ④항 1호에서 정한 출금계좌에서 자동지급) 2)명세통보를 근거로 매입을 취급한 건들 사이에는 그 매입일이 빠른 순서로, 3) 동 일자 매입을 취급한 건들 사이에서는 채권명세서 통보순(매매정보 번호가 빠른 순서)의 순서로 충당한다. 다만, “은행”은 “판매기업” 앞 원활한 매입대금 회수를 위해서 상기 충당순서를 달리 적용 운영할 수 있다.

- ② 채권명세통보를 기초로 “은행 “이 매입한 “매출채권” 에 대해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은 이행일 당시의 관련 매입잔액에 대하여 “은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③ “은행”은 채권명세통보를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제4조 제4항의 지정계좌 잔액(다만, 출금제한사유 등으로 출금이 제한된 잔액 제외)이 만기가 도래된 “은행”의 양수금, MP수수료(“구매기업”이 MP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그 초과액을 “판매기업”에 지급한다.
- ④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1. 업무처리의 대상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 2. “은행”의 업무처리가 법적, 기타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제 규정상의 제한이 있을 때
 - 3. “구매기업”에게 부도, 영업정지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은행”이 판단하였을 때
- ⑤ “구매기업”은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판매기업”과 별도 약정체결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은행”이 동 사항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이의제기를 받아 입게 되는 손해를 “은행”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기업에 대한 매입제한 등)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매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판매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
 - 2.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양도된 매출채권 만기일에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3. “판매기업”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4. “판매기업”이 당해 “매출채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전산상 장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 6. “은행”의 내부규정의 변경 및 기타 “판매기업”에 대하여 매입을 취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7. “판매기업”이 서울보증보험(주)의 e-Biz보증보험증권을 담보제공한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매입중단 통지를 받는 경우
 - 8. 본 계약서 제14조에 의거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되기 전이라도 “은행” 또는 “구매기업”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 ②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전산방법 또는 서면”으로 “판매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기업 등의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발생시 처리 등)

- ① “판매기업” 또는 “을”이 “은행”의 은행여신거래 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발생시에는 “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양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는 그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조기 변제하기로 한다. 단, “은행”과 “구매기업”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구매기업”의 (조기) 변제에 불구하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 등으로부터 이증지급을 요구받는 경우, “은행”은 “구매기업”이 이증지급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③ “판매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기로 하며, 양 당사자는 위 사실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9조 (기타 사항)

-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② “은행”은 “판매기업”과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①항 제1호 소정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의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한다. 이 경우 “구매기업”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동 판매기업의 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대행업무를 하기로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은행”과 “구매기업”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을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준용사항)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채권의 권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시행일)

-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는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산시스템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 ② 채권양도 통지 비용 등 “본 계약”에 따른 업무 관련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시행일 이전에 “은행”,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의 3자간 합의로써 정하기로 한다.
- ③ “은행”과 “구매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

제14조 (계약서 효력)

- ① “본 계약”은 체결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종료 이전에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명세를 통보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15조 (계약증명)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은행”과 “구매기업”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은행)

(구매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

주식회사

(주소)

(주소)

지 점 장

(인)

대표이사

(인)

본인의 자서확인	소 속		직 위		성명	(인)
----------	-----	--	-----	--	----	-----